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93
----------	-------

발의연월일 : 2018. 11. 26.

발 의 자 : 김정호 · 박재호 · 안호영  
김철민 · 윤관석 · 황주홍  
이찬열 · 전해숙 · 서형수  
민홍철 · 전재수 · 김병욱  
의원(12인)

## 제안이유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의 발생으로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1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인 건축물로,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여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내진설계 미반영된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어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법개정 취지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진발생지역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법 시행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을 강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진진단대상건축물을 선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진단 필요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48조의4 신설).
- 나. 진단대상건축물 소유자는 선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내진진단 실시와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8조의5제1항 신설).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내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5제2항 신설).
-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진진단을 실시한 결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내진보강이 시급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보강 실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6 신설).
- 마. 이행 강제를 위하여 내진진단결과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내진진단 의무를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진보강에 관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조제5호의2, 제112조, 제11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의2 신설).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4를 제48조의7로 하고,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4(내진진단대상건축물의 선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용도, 규모, 준공년도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중 특별히 내진능력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진진단대상건축물을 선정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건축물이 내진진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 내진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된 사유
2. 내진진단 방법
3. 내진진단 시 비용 지원 등 지원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내진진단과 관련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의 방법, 통지 방법 및 그 밖에 대상

건축물의 선정 및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5(내진진단대상건축물의 내진진단 등) ① 진단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진단대상건축물의 선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진진단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업체나 기관, 단체 등(이하 “내진진단업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내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진진단 결과를 공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진진단의 평가 기준, 결과의 보고 절차, 제3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그 밖에 내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6(내진진단대상건축물의 내진보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의5에 따른 내진진단을 실시한 결과,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내진보강이 시급한 내진진단대상건축물(이하 “보강의무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내진보강을 실시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내진보강의 실시를 통보받은 보강의무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보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강의무건축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10조제9호의3 중 “제48조의4”를 “제48조의7”로 한다.

제111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내진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112조 및 제113조를 각각 제113조 및 제114조로 하고, 제1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벌칙) 제4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내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종전의 제11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내진보강의 실시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의2. 제4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내진진단의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48조의4(내진진단대상건축물의 선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용도, 규모, 준공년도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중 특별히 내진능력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하여야 한다.</u></p> <p><u>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진진단대상건축물을 선정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건축물이 내진진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해당 건축물이 내진진단대상 건축물로 선정된 사유</u></li> <li><u>2. 내진진단 방법</u></li> <li><u>3. 내진진단 시 비용 지원 등 지원에 관한 정보</u></li> <li><u>4. 그 밖에 내진진단과 관련된</u></li> </ol>

<신 설>

정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의 방법, 통지 방법 및 그 밖에 대상건축물의 선정 및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5(내진진단대상건축물의 내진진단 등) ① 진단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진단대상건축물의 선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진진단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업체나 기관, 단체 등(이하 “내진진단업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내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진진단 결과를 공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진진단의 평가 기준, 결과의 보고 절차, 제3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그 밖에 내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6(내진진단대상건축물의 내진보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의5에 따른 내진진단을 실시한 결과,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내진보강이 시급한 내진진단대상건축물(이하 “보강의무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내진보강을 실시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내진보강의 실시를 통보받은 보강의무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보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군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생략)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의2. (생략)

9의3. 제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10. ~ 12. (생략)

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강의 무건축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48조의7(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현행 제48조의4와 같음)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제48조의7-----  
-----  
-----  
-----

10. ~ 12. (현행과 같음)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신설>

6.·7. (생략)

<신설>

제112조(양벌규정) (생략)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제111조(벌칙)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4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내진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6.·7. (현행과 같음)

제112조(벌칙) 제4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내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3조(양벌규정) (현행 제112조와 같음)

제114조(과태료)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4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내진보강의 실시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  
-----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신설>

6. ~ 9. (생략)

③·④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4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내진진단의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 9.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